



제 433국회 (임시회)
제 1 차 정 무 위 원 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제3자 개인정보의 대부제공 목적 외 수집 금지〉

■ 이훈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377호)

2026. 3.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훈기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6. 1. 28.
3. 회 부 일 : 2026. 1. 2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부과정에서 대부업자가 수집한 거래상대방의 개인정보를 대부를 제공하기 위한 용도 외의 목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대부업자가 대부과정에서 거래상대방 주변인의 연락처 등을 활용하여 불법적으로 추심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거래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개인정보 수집 금지에 대해서도 현행법에 명확히 규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부업자가 대부과정에서 대부를 제공하기 위한 용도 외의 목적으로 거래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것을 원천 차단함으로써 불법 추심을 근절하고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9조의9제4항 신설 등).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대부업자가 대부를 제공하기 위한 용도 외 목적으로 거래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려는 것임 (안 제9조의9제4항 신설 및 제19조제2항제6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의9(대부업 <u>이용자의</u> 개인정보 보호) ① ~ ③ (생략)	제9조의9(대부업 <u>이용자 등의</u> 개인정보 보호)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설>	④ 대부업자는 대부과정에서 대부를 제공하기 위한 용도 외의 목적으로 거래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19조(벌칙) ① (생략)	제19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신설>	6. 제9조의9제4항을 위반하여 제3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③ ~ ⑤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 현행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함)」은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가 대부(중개) 과정에서 수집한 거래상대방의 개인정보를 대부제공(중개)하기 위한 용도 외의 목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¹⁾.

○ 그런데 대부 관련 거래상대방이 아닌 친인척·지인 등 “제3자”에 대하여는 명시적으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처리를 금지하는 규정이 부재한바, 대부업자가 대부과정에서 거래상대방 주변인의 연락처 등을 활용하여 불법 추심행위를 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개정안은 대부업자의 제3자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금지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대부이용자 및 주변인의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고 불법 추심행위 방지를 보다 실효적으로 도모할 수 있는 긍정적인 입법취지로 생각됨.

-
-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9(대부업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① 대부업자는 대부과정에서 수집한 거래상대방의 개인정보를 대부를 제공하기 위한 용도 외의 목적으로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대부중개업자는 대부중개과정에서 수집한 거래상대방의 개인정보를 대부중개를 하기 위한 용도 외의 목적으로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대부업 이용자의 정보를 사용 및 관리할 때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부업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9조의9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대부과정 또는 대부중개과정에서 수집한 거래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정해진 용도 외의 목적으로 처리한 자
5. 제9조의9제3항을 위반하여 대부업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한 자 또는 보관·전달·유통한 자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먼저, 채무자 관계인(제3자)에 대한 채권추심 행위 등은 이미 관계 법령상 금지되어 있어, 이를 「대부업법」에 추가적으로 반영할 실익은 적을 것으로 보임.

○ 현재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따르면 채무와 관련하여 채무자 본인이 아닌 관계인에 대하여 채무자의 소재 파악 문의 목적 외에 연락하는 행위²⁾는 금지되어 있고³⁾, 「대부업법」 제8조의2에 따르면 관계인 연락 등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 불법적인 대부계약 조건을 포함한 대부계약은 무효임⁴⁾⁵⁾.

2) 예컨대 관계인에게 직접 채무독촉을 하거나 대부이용사실을 알리는 행위는 불법임.

3)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 ①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채권추심자는 제1항에 따라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계인에게 밝혀야 하며, 관계인이 채무자의 채무 내용 또는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채권추심자의 성명·명칭 및 연락처(채권추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업무담당자의 성명 및 연락처를 포함한다)
2. 채권자의 성명·명칭
3. 방문 또는 말·글·음향·영상·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목적

제15조(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대부계약의 효력)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대부계약은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대부업자, 불법사금융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대부제공자”라 한다)은 제8조, 제11조 및 제15조에도 불구하고 거래상대방에게 그 원본의 반환 및 이자의 변제를 청구하지 못하며, 거래상대방이 대부제공자에게 이미 지급한 원본과 이자가 있으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1. 대부계약 과정에서 대부제공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거래상대방에게 하거나 거래상대방이 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영상물·음성물 또는 그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및 복제물을 요구·수집·제공·유통하는 행위

- 따라서 대부업자가 대부계약에 지인추심 등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채무자의 동의를 받아 채무자 관계인의 연락처를 수집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대부계약은 무효로 보아야 하며, 이러한 불법 대부계약조건에 근거한 지인추심 등 행위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벌대상임.

○ 또한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에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나(법 제15조),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하고(법 제16조), 수집한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외로 이용할 수 없음(법 제18조)6).

-
- 나. 인신매매, 신체의 상해 또는 포기, 장기기증, 강제취업, 강제노동 등 개인의 신체와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2. 폭행·협박·체포·감금·위계·위력을 사용하거나 채무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체결된 대부계약으로서 대부계약의 내용이 거래상대방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경우
 3. 대부계약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제9조, 제10조 및 제12조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4.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부이자율이 제8조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의 3배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하는 내용으로 체결된 경우
 - 5) 설령 대부이용자가 대부계약 시 지인 등 관계인에 대하여 대부이용사실을 알리고 채무독촉 등을 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취지의 동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법률에 위반되는 특약*으로서 무효임.

*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 6)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

○ 예외적으로,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등의 경우 수집한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할 수 있으나, 이러한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외 사용은 ‘정보주체나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을 때’로 제한됨.

- 따라서 대부이용자의 소재 파악 등 비상연락처 용도로 수집한 제3자의 개인정보를 지인추심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는 설령 별도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정보주체나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도 있을 것으로 보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7.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는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28조의8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하 각 호 생략)

□ 다음으로, 개정안은 제3자 개인정보 제공 금지를 ‘대부업자’에 대하여만 적용하고 있는데, 개정안 반영 시 이를 ‘대부중개업자’에 대하여도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제3자 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은 대부를 직접 제공하는 대부업자뿐만 아니라 대부중개사이트를 운영하는 대부중개업자를 통해서도 발생하고 있고⁷⁾, 현행법상 거래상대방의 개인정보 목적 외 사용 금지 조항은 대부업자 외에 대부중개업자에게도 적용되고 있음.

□ 참고로, 금융위원회는 대부업자가 대부과정에서 수집한 거래상대방 외 제3자의 개인정보를 불법채권추심에 활용하는 등 대부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 외로 처리하는 것을 금지·처벌하기 위한 입법 취지에 공감하나, 제3자의 개인정보를 대부 제공 목적 외 ‘수집’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부 제공 목적 외 ‘사용’하는 것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것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⁸⁾, 해당 금지조항을 ‘대부업자’ 외에 ‘대부중개업자’에 대해서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7) 대부중개사이트에 가입·접속하여 대부중개·광고 등을 클릭하면 불법대부·추심을 행하는 불법사금융업자에게로 연결되어 개인·가족의 정보 등이 노출되는 사례 등

8) 정보 수집 시에는 ‘대부 제공 목적’으로 동의를 받아 수집하되, 수집 이후 ‘목적 외 사용’을 하는 방식은 개정안에 따른 금지·처벌대상인지 여부가 불명확하여 규제 회피 우려가 있다는 의견

문 의 처
02)6788-5108